

안동과학대학교 학칙

제정 1979.3.1.

개정 2016.9.1.

개정 2016.12.19.

개정 2017.3.1.

개정 2017.8.28.

개정 2018.3.1.

안동과학대학교(교무입학처) 054-851-3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안동과학대학교라 한다. <개정 2012.3.1., 승인사항>

제3조(위치) 본 대학은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학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계열)	입학정원	학과(계열)	입학정원
간호학과	200명	미래자동차공학과	40명
보건행정과	40명	건설정보과	40명
물리치료과	90명	의료공학과	30명
의약품질분석과	80명	유아교육과	60명
치위생과	65명	항공보안과	30명
건강관리과	30명	사회복지과	40명
뷰티아트과	30명	스포츠레저과	30명
식품영양과	30명	축구과	20명
국방의료과	35명	호텔조리과	30명
사이버보안과	30명	전기자동화과	20명
항공산업경영과	30명	호텔서비스과	20명
계			1,020명

<개정 2017.3.1., 2018.3.1.>

② 전 항 설치학과 이외에 교양교직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3.1.>

③ 학과 폐지로 인하여 재적생이 다른 학과로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3.1.>

제4조의2(학과폐지) 본 대학에 설치한 학과(계열)의 폐지에 관한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 수업연한은 간호학과는 4년,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컴퓨터정보과는 3년, 그 외의 학과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8.28.>

제6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의 재학연한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삭제

③ 삭제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1학기(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2학기(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전·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실습학기 또는 계절 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③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8.>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과목의 학점 충족요건 시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8.28.>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총장은 비상재해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개정 2017.8.28.>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 지원은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5 삭제 <2011.9.1.>

제14조(학생선발) ①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학생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해서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 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면접고사
3. 기타(실기고사, 적성검사, 신체검사 등)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특별전형)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의2(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3(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5.3.27.>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7.8.28.>

② 입학허가 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로 합격한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5조의2(이중 학적의 금지) 본 대학의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군복무 중 폐과된 과의 학생의 편입학은 해당학과 수업일수 1/4선 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학과의 졸업생이 동일학과에 편입학 할 경우는 3학년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학과 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타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17.8.28.>

제16조의2(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17.8.28.>

② 전과는 전입 및 전출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7.8.28.>

③ 전과한 자는 소정 전공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④ 삭제 <2008.3.1.>

⑤ 의료법 제2조 제1항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되는 간호, 보건 관련학과로의 전과 등은 제외한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8.28.>

제17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자는 당해 모집 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본 대학교에서 구성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폐지된 학과의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재입학하고자 하는 그 학과의 교과 과정 등의 관련성 및 이수 학점 등을 고려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2.3.1.>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병·의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1.9.1.>
-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제19조의2(복학) ① 각종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학기 개시 이후 또는 복학 허용 마감일 이후 군복무(현역, 공익근무 등)자는 소속부대장으로부터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용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복학을 허용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병적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 후 제적을 군 입대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용한다.

③ 등록금을 납부하고 군 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이 변동되었을 경우라도 변동으로 인한 차액을 징수·환불(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3.1.>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3.1.>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삭제
 8.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8.28.>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5%, 전문교과 75%~90%로 하고 전문교과의 50%는 실험·실습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현장실습 포함)의 비율을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②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며, 각 과별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③ 삭제 <2011.9.1.>

④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5.3.1.>

제22조의2(교과과정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② 기타 교과과정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대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1.>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운영) ① 본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2.27.>

제23조의2(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전공 분야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비정규과정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본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3조의3(시간제 등록제 운영) ①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선발인원은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이내에서 선발한다. 단,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약학·사범계열은 제외한다. <개정 2012.3.1.>

④ 시간제 등록생은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 등으로 선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모집 시기에 공고한다.

⑤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과과정은 전일제 학생과 통합 운영한다.

⑥ 시간제 등록생의 최대 이수학점은 전일제 학생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 이내에서, 연간 최대 20학점까지로 한다.(계절학기 포함)

⑦ 기타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적 운영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학점은행제) 본 대학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5(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1.>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합계	주간	야간
산업체경력 있는	간호학과	1년	20	-	20
	건설정보학과	2년	15	-	15
산업체경력 없는	사회복지학과	2년	20	-	20
	의료공학과	2년	15	-	15
	치위생학과	1년	15	15	-
	유아교육학과	1년	15	-	15
	뷰티아트학과	2년	15	15	-
	축구학과	2년	15	-	15
	물리치료학과	1년	15	-	15
	계		145	30	115

<개정 2016.3.1., 2018.3.1.>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및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집 방법, 등록금, 등록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1.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9개월 이상인자

2.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은 해당 대학의 동일 과로 졸업하거나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⑤ 전문대학 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로 하고, 전문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12학점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⑦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수업연한 2년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60학점 이상, 1년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

⑧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 학과는 2년 이상,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으로 한다.

⑨ 본 대학에서 소정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⑩ 다음 각 호의 해당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1. 2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1년 수료 : 30학점 이상
2. 2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2년 수료 : 60학점 이상
3. 3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1년 수료 : 20학점 이상

⑪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는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	비고
총이수학점	80	120	140	
교양교과	12	18	30	
전문교과	48	72	77	

위 사항에 충족 되어도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12.3.1., 2014.3.1.>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④ 계절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계절 학기에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19.>

⑤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자의 교양과목의 학점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학생이 재학 중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 교

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⑧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교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40학점(3년제는 60학점, 4년제 80학점)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08.3.1., 2012.3.1.>

제25조(수업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3.1.>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학생의 현장 적응 능력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습만으로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1.>

④ 제1항에 따른 수업을 대학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동수업의 대상, 요건, 과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8.3.1.>

제25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대신한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3.1.>

제2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결상황, 평소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 9 단계 평점 방법

등 급	배 점	평 점	등 급	배 점	평 점
A ⁺	95 - 100	4.5	C ^o	70 - 74	2.0
A ^o	90 - 94	4.0	D ⁺	65 - 69	1.5
B ⁺	85 - 89	3.5	D ^o	60 - 64	1.0
B ^o	80 - 84	3.0	F	59점이하	0
C ⁺	75 - 79	2.5	P		불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 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8조(진급인원) 매 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제29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30조(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의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단, 4년제 간호학과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3.1.>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약정에 의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협정대학교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1.>

제31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3.1.>

제32조(유급)

- ① 삭제
- ② 삭제

제8장 학생 활동

제33조(학생회 조직)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지도능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안동과학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할 때에는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간섭을 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지도) 학생회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처(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39조(간행물 발행) 학생회 단체 또는 학생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물은 배포 전 산학협력처(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삭제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병·의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10장 납입금

제45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 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납부한 납입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④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재학생 중에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7.8.28.>

제45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제46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면제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장학금

제47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1. 학업 성적이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휴학시 장학금의 이연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8.28.>

제12장 교수회

제48조(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조직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5.3.1.>
2. 삭제 <2011.9.1.>
3. 삭제 <2011.9.1.>
4. 삭제 <2011.9.1.>
5.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3장 직제

제50조(교직원) 본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기타 사무 직원을 둔다. <개정 2012.3.1.>

제51조(직제) ① 본 대학에는 기획조정본부, 산학협력처, 교무입학처, 행정지원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12.3.1.>

② 각 부서에 부서장을 보하고,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부서 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④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⑤ 본 대학에 학교기업을 두며,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6.22.>

⑥ 본 대학에 총장 직속기구로 LINC사업단을 두며, LINC사업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제51조의2(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안동문화춘학교기업’이라 한다.

② 안동문화춘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에 설치한다.

③ 안동문화춘학교기업은 실내공간인테리어과와 연계하여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제51조의3(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안동문화춘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5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30시간 이상 이수 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의4(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52조(부속기관) 본 대학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기관별 운영규정 등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2012.3.1.>

① ~ ④ 삭제 <2011.9.1.>

제52조의 2(도서관)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따라 본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장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1.]

제15장 보칙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 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과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2(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제55조의3(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 2015.3.1.>

제55조의5(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개정 2008.3.1., 2009.2.27., 2012.3.1., 2015.3.1.>

제56조(성희롱·성폭력)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과학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둔다.

② 기타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3.2.>

제56조의2(장애학생지원)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내지 3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과학대학의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3.1.>

제58조(학사제도개선) ① 대학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적절한 학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학사제도 개선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② 학사제도 개선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79.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안동간호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 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③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1.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부칙<1983.12.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안동간호전문대학 재학생은 변경학칙에 의한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해당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1984.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5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85.1.15.>

- ① (졸업자격고사 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 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4.1.>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8.13.>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간호과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이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1990.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1학년도 개시 일로 부터 시행하되 199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재학 중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당시 물리치료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 중인 자를 포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2.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은 시행당시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안동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교직원의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소속 교직원 은 이 학칙에 의한 안동전문대학의 소속으로 한다.

부칙<1993.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8.24.>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영어과, 일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영어과, 관광일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1996.9.18.>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자동차정비과, 공업경영과, 경영과, 산업위생과, 산업안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차정비과는 자동차과로, 공업경영과는 품질관리과로, 경영과는 유통경영과로, 산업위생과와 산업안전과는 산업안전위생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 학과, 통합된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1997.1.1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5.>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환경공업관리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1998.1.13.>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안동과학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8.11.19.>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공업관리과, 전자계산과, 품질관리과, 유통경영과, 도시및지역계획과, 실내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환경공업관리과는 환경관리과로, 전자계산과는 정보처리학과로, 품질관리과는 산업정보공학과로 유통경영과는 마케팅정보학과로 도시및지역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과로, 실내디자인과는 실내건축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1999.5.7.>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3.>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위생과, 산업정보공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산업안

전위생과는 산업보건과로, 산업정보공학과는 산업정보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1.3.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무자동화과, 도시계획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사무자동화과는 인터넷비즈니스과로, 도시계획정보과는 경호경찰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2.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관리과, 정보처리학과, 마케팅정보학과, 광고기획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환경관리과는 환경보건과로, 정보처리학과는 정보처리과로, 마케팅정보학과는 마케팅정보과로, 광고기획과는 광고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학과폐지 등에 따른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보육과로 입학한 자(휴학 중인 자를 포함)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④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3.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3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건과, 정보처리과, 산업정보과, 산업보건과, 식품과학과, 토목과, 가족복지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환경보건과는 보건환경과로, 정보처리과는 컴퓨터정보과로, 산업정보과는 시스템경영정보과로, 산업보건과는 건강관리과로, 식품과학과는 식품조리과학과로, 토목과는 건설정보과로, 가족복지과는 사회복지과의 소속으로 본다.

③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 연장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④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3.12.3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12월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3월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인터넷비즈니스과, 식품조리과학과, 광고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비즈니스과는 사이버테러대응과로, 식품조리과학과는 식품조리과로, 광고디자인과는 광고영상디자인과로, 실내건축디자인과는 실내공간인테리어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4.6.22.>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6월22일 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보건환경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의약품질분석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4.12.3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12월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6.>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5월6일 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식품조리과, 생활체육과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계열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5.5.18.>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5월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10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4.>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10월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3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이버테러대응과, 실내공간인테리어과, 마케팅정보과, 광고영상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정보보안부사관과로, 실내공간인테리어과는 건축인테리어과로, 마케팅정보과는 마케팅컨택관리과로, 광고영상디자인과는 CF홍보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2009.2.27.>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2월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종전의 마케팅컨택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마케팅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 ③종전의 체육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스포츠레저과 소속으로 본다.
-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학과의 폐지되는 CF홍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2011.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학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정보보안부사관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의무부사관과 소속으로 본다.

③종전의 자동차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동차에너지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칙<2011.9.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9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및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학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자동차에너지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동차&에너지계열 소속으로 본다.

③종전의 관광일어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과 소속으로 본다.

④종전의 경호경찰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보안과 소속으로 본다.

⑤종전의 3년제 간호과에 소속된 재학생은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의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4조 (직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2012년2월1일자 직제 개편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1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학과가 폐지되는 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2014.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종전의 자동차&에너지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미래자동차공학과 소속으로 본다.

③ 종전의 식품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중 식품영양전공 소속 학생은 식품영양과 소속으로, 호텔외식조리제빵전공 소속 학생은 호텔조리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2015.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학과가 폐지되는 마케팅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학과가 폐지되는 항공호텔과, 건축인테리어과, 미술심리재활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유사학과로의 전

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칙<2016.9.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19.>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8.28.>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의무부사관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국방의료과 소속으로 본다.

③ 종전의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이버보안과 소속으로 본다.

④ 종전의 시스템경영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산업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 소속 교원은 학과 명칭 변경된 과의 소속으로 본다.

[별지 1호 서식] 학위증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안동과학대학교 - ○○○○ - ○○○○

[별지 2호 서식] 학위증서 <개정 2017.3.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 학년도 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안동과학대학교 - 0000 - 0000

[별지 3호 서식] 수료증명서

안동과학대학교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과 :
학 번 :
학 년 :
입 학 일 자 :
총 취득 학점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별지 4호 서식] 학위증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
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안동과학대학교 - ○○○○(학) - ○○○○

[별지 5호 서식]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
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별표 1] 학위명칭

학위명칭

학위	종 별	해 당 학 과
전 문 학 사	간호전문학사	간호과
	보건전문학사	보건행정과, 산업위생과, 산업보건과, 건강관리과, 뷰티아트과
	물리치료전문학사	물리치료과
	환경전문학사	환경관리과, 환경공업관리과, 환경보건과, 보건환경과
	공업전문학사	공업경영과, 품질관리과, 산업정보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위생과, 자동차정비과, 자동차과, 토목과, 산업정보과, 시스템경영정보과, 건설정보과, 자동차에너지계열, 자동차&에너지계열, 미래자동차공학과, 항공산업경영과, 전기자동차과,
	컴퓨터전문학사	전자계산과, 정보처리학과, 사무자동화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정보처리과, 컴퓨터정보과, 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보안과
	식품전문학사	식품과학과, 식품조리과학과
	관광(영어)전문학사	영어과, 관광영어과, 항공호텔과
	관광(일본어)전문학사	일어과, 관광일어과
	관광전문학사	관광과
	경영전문학사	경영과, 유통경영과, 마케팅정보학과, 마케팅정보과, 마케팅컨설팅관리과, 마케팅경영과
	교육전문학사	보육과, 유아교육과
	도시개발전문학사	도시 및 지역계획과, 도시계획정보과
	복지전문학사	가족복지과, 사회복지과
	광고전문학사	광고기획과, 광고디자인과, 광고영상디자인과, CF홍보과
	실내건축전문학사	실내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공간인테리어과, 건축인테리어과
	체육전문학사	생활체육과, 체육계열, 스포츠레저과, 축구과
	경호경찰전문학사	경호경찰과
	보안전문학사	항공보안과
	식품영양전문학사	식품조리과, 식품계열, 식품영양과
	의약품질분석전문학사	의약품질분석과
	의료공학전문학사	의료공학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정보보안부서관전문학사	정보보안부서관과
	의무부서관전문학사	의무부서관과
	미술심리재활전문학사	미술심리재활과
	항공호텔전문학사	항공호텔
	조리전문학사	호텔조리과
	국방의료전문학사	국방의료과
	호텔경영전문학사	호텔서비스과
학 사	간호학사	간호학과
	공학사	건설정보학과, 의료공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보건학사	뷰티아트학과
	체육학사	축구학과
	물리치료학사	물리치료학과